#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8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김원이·서미화·이정문

남인순 · 서영석 · 김한규

문금주 · 서삼석 · 박지원

김선민 · 민형배 · 이해식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.

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, 그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운영비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5항

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보조금 등) ① ~ ④ (생	제17조(보조금 등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
	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
	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	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
	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
	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
	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